

7. 少數 意見의 要旨 : 없 음
 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

질 문 답 변 서

(지역경제과)

질문의원	나승혁의원(재무건설위원회의원 : 송인2동)
【보충질문】	
○ 종로구는 타 지자체보다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규칙을 특별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	
【답 변】	
○ 우리구 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 관리및사업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한 구청장에게 위임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.	
○ 액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,동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로서 규정한 내용은 △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△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△연결도로, 도시계획 그 밖의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에 사업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	
○ 그 밖의 이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관할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	
○ 따라서 문화재보호와 안전관리등(가스판매소와의 이격거리)을 제한하는 동규칙의 특별규칙 제정건은 액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 입니다. 지정 문화재의 안전관리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을 문화진흥과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.	